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 및 수수료 표준요금표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구현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 (안 제6조1항)
 - 제4호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규정 삭제
-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금표 일부 삭제
 - 〈증명〉 5.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800을 삭제
-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금 변경
 - 문서·대장 등, 도면·카드 등의 전산자료의 사본 수수료 중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회 200원

- 녹음·녹화·영화필름·슬라이드의 복제 수수료 중
 - 10분마다 3,000원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수수료 중
 - 10분마다 5,000원 → 1건(1MB 기준)1회: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3. 조례개정안 : 불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 대통령령 제2175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9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제외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2) 공부열람			지적관계제외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3)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	1,000 칼라도면첨부 1,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삭제)	(삭제)		관련법개정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2) (삭제)				유권해석
(3) (삭제)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8.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2) (삭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4,500 연장2,700	전국통일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인27,000 개인18,000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1건	1,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4)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 용 료 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 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 용 료 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점 용 료 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1건	20,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1건	10,000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 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또 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전국통일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전국통일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전국통일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6)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27,000	신설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9,000	신설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수 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 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 사항제외)		1건	500	

[별표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 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 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 이유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생략) 1.~3. (생략) 4.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 수료를 면제한다(신설2008.07.16)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관련법개정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9.9.29 대통령령 제2175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21755호,2009.9.29>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
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
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9.9.29>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조) 수수료

[별 표]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 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 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칸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칸(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칸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